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9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이용우 · 이기현 · 신장식
안호영 · 홍기원 · 손 솔
민병덕 · 전종덕 · 박정현
박홍배 · 임미애 · 김성희
이학영 · 박 정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 · 프리랜서 ·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이러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 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등은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 라. 지방단체장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안번호 5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활성화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전한 고용·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의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2. 일하는 사람의 근로와 권익에 관한 조사·연구·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3.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공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하는 사람의 지원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원계획에 근거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내 일하는 사람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른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사업
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일하는 사람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5.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일하는 사람 지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